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어 조례 상 인용 법령을 보완하고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제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인용 법령 변경

: 「노인복지법」 → 「치매관리법」 (안 제17조)

나. 치매지원센터 재 위탁 운영기간을 한차례로 제한하고, 위탁 운영에 관하여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함 (안 제4조제3항, 제4항)

다.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관련 조항 삭제 (안 제9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

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2015.07월 ~ 2015.08월(20일 이상)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- 4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- 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재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치매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”을 “「치매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는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 및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~ ② (생략)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재 위탁할 수 있다. <신 설>	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. ④ 치매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제9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	<삭 제>

<p>3. 치매지원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치매가족 및 관련 대표</p> <p>2. 지역대표</p> <p>3. 관계공무원</p> <p>4. 치매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</p>	<p><삭 제></p>
---	--------------------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.	<삭 제>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지역보건법」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3조(준용) ----- ----- 「 <u>치매관리법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 사항 없음

4. 작성자

의약과 가족보건팀 김연원(☎02-330-8685)

관계 법령

□ 치매관리법 [시행 2012.2.5.] [법률 제11013호, 2011.8.4., 제정]

제17조(치매상담센터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(이하 “치매상담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2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3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4.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·관리
5. 치매조기검진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